# 지방의회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HR Management of Local Council
## - Focusing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

양 덕 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

Duk-Soon Yang

Present Korean system is based on 'main-chief of local government', 'minor-local council'. Thus, the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of council was raised repeatedly. Especially, since the constitu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importance of council, a part of local government is growing. This study suggested operation improvement plan of secretaria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as a research on HR manage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First, there is a need to newly establishes series of classes of council in secretariat.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to set the basic direction to setting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not a rank system to establish subject and standard of classification. Second,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HR exchange plan among councils. HR exchange among councils is a measure to supplement establishment of series of classes of council, which should be conducted in regional wise regarding personnel administra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specialists. To reinforce legislative function of standing committee members and monitoring toward executive body, there is a need to upgrade the position of specialists who are currently bound at grade 4 government employee according to current law. Also,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legislative activity, there is a need to separately establish a support system such as legislation researcher or communication support team to reinforce specialist group. Fourth,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support for legislative activity. There is a need to aggressively review on the reorganization of legislative policy manager office. Also, by categorizing its function as legislation and policy support task, it could conduct policy analysis and research analysis task required by the standing committee.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a parliamentary politics support system which would allow professionalism of individual congressman along with expansion of achievement of authority over HR and policy advisory function of secretariat.

Keyword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independent authority over HR, HR management, series of classes of council

* 본 연구는 2017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다.

# I. 서 론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한 지 27년여가 지나고 있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 의결기관이며.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현재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써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지역사회 갈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 주민의 민원 해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권한의 실질에 있어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강-지방자치단체장', '약-지방의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손진상, 2013).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역량이다. 지방의회의 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고 둘째는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의 전문성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역량은 지방의원의 역량과 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역량의 합이라는 측면이 있다(오영균, 2015).

제주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중앙사무가 제주로 상당부분 이양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었다. 의회 또한 기존 시군의회가 폐지되었고 광역의회로 통합되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1]제 신설 등 의회의 권한과 조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12년이 경과한 현재 기관분리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기구 직원을 임명함으로써 지방의회로 하여금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민선7기 제주도정 또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권과 인사권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 등 의회와의 협치(協治)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인적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현황, 문제점 도출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논의

###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의 및 기능

---

1)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 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제주특별법 제39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0조에 근거하여 '시·도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무기구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국회사무처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이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한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의 경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임용권이 구분되어 있으며, 국회의장이 부여한 권한의 일부를 사무총장은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은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 임용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국회와 지방의회는 관장하는 업무 기능의 차이점이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가 전반에 걸쳐 의원의 국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설치관련 규정의 차이점이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으로는 헌법 제118조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지위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조례의 제정·개폐 등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동법 제39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와 집행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동법 제41조, 제42조)를 가지고 있다. 넷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역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대의기능, 입법기능,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 의결기능 등에 중요성을 둔다. 이렇듯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고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유지 차원에서 의회자체의 관리 유지를 위한 기능으로써 조직 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행정업무를 총칭한다. 둘째, 의회운영 차원에서 의회의 특정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으로써 위원회의 회의장 준비·관리, 의사진행, 입법지원체제의 운영, 전문위원 운영, 보좌관제의 운영이 이에 속한다. 셋째, 기능차원에서 의회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일체의 필요한 행위로써 예산심의, 청문회 개최, 각종 정책의 평가, 의안처리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의장의 대외적 대표권에 속하는 사무로써 의결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이송, 청원처리결과의 통지, 의원 궐위시 관계기관에의 통지 등의 사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차원을 업무의 성질로 분류해 보면 조직유지 차원은 순수 행정

관리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차원과 기능차원은 관리업무를 토대로 의회가 성취해야 할 의회 전속적인 성질의 업무라 할 수 있다.(박재창, 2003).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의 전문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후자의 업무, 특히 기능차원에서 논의하였던 지방의회의 의안심의·처리 등 입법기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원이 의회 내에서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황아란, 2003).

###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인사제도

지방의회는 기관분리형 자치제도 하에서 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사무기구와 직원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2조와 각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설치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형태를 달리 정하고 있다. 즉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법」제90조 제1항에서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고 정함으로써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이에 비해 기초의회의 의회사무기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광역의회 사무기구와는 차별화하였다.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시·도의회에는 사무처를, 시·군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의회사무국과 사무과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법」의 하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즉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 사무과의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와 지방의원 정수에 따라 달리 정하며,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군이나10명 미만인 시·자치구는 의회 사무과를 두도록 하고 있다

**〈표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 구분 | 대상 |
|---|---|
| 의회사무처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 의회사무국 |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
| 의회사무과 |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 |

자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처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무처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 별정직공무원, 지방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2013.7.16] [[시행일 2013.12.12]]
1. 별정직공무원
2.「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전국 시도의회별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는 2.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7명, 부산 2.4명, 대구 3.1명, 인천 3명, 광주 3.1명, 대전 4.2명, 세종 3.1명, 울산 2.9명, 경기 1.6명, 강원 2.1명, 충북 2.4명, 충남 2.5명, 전북 2.6명, 전남 1.7명, 경북 2명, 경남 2.1명 제주 3.6명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가 1.6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 전국 시도의회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

| 구분 | 의원수 | 직원 수 |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 |
|---|---|---|---|
| 서울 | 110 | 300 | 2.7 |
| 부산 | 47 | 114 | 2.4 |
| 대구 | 30 | 93 | 3.1 |
| 인천 | 37 | 110 | 3.0 |
| 광주 | 23 | 72 | 3.1 |
| 대전 | 22 | 93 | 4.2 |
| 세종 | 18 | 56 | 3.1 |
| 울산 | 22 | 64 | 2.9 |
| 경기 | 142 | 227 | 1.6 |
| 강원 | 46 | 98 | 2.1 |
| 충북 | 32 | 77 | 2.4 |
| 충남 | 42 | 103 | 2.5 |
| 전북 | 39 | 100 | 2.6 |
| 전남 | 58 | 97 | 1.7 |
| 경북 | 60 | 119 | 2.0 |
| 경남 | 49 | 102 | 2.1 |
| 제주 | 43 | 153 | 3.6 |

자료: 전국 시도의회 홈페이지.

(2) 지방의회 전문위원

「지방자치법」제59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에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한다(「지방자치법」제59조제2항). 전문위원의 직급은 광역의회의 경우 4급 및 5급 이하, 기초의회의 경우 5급 및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손진상, 2013). 전국 시도의회 전문위원 1인당 의원 수 평균은 4.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8명, 부산 3.4명, 대구 5명, 인천 3.1명, 광주 3.8명, 대전 2.2명, 세종 4.5명, 울산 4.4명, 경기 5.5명, 강원 9.2명, 충북 2.5명, 충남 3명, 전북 4.3명, 전남 4.5명, 경북 5명, 경남 3.3명, 제주 5.4명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9.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2.2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전국 시도의회 전문위원 1인당 의원 수

| 구분 | 전문위원 | 전문위원 1인당 의원 수 |
|---|---|---|
| 서울 | 19 | 5.8 |
| 부산 | 14 | 3.4 |
| 대구 | 6 | 5.0 |
| 인천 | 12 | 3.1 |
| 광주 | 6 | 3.8 |
| 대전 | 10 | 2.2 |
| 세종 | 4 | 4.5 |
| 울산 | 5 | 4.4 |
| 경기 | 26 | 5.5 |
| 강원 | 5 | 9.2 |
| 충북 | 13 | 2.5 |
| 충남 | 14 | 3.0 |
| 전북 | 9 | 4.3 |
| 전남 | 13 | 4.5 |
| 경북 | 12 | 5.0 |
| 경남 | 15 | 3.3 |
| 제주 | 8 | 5.4 |

자료 : 전국 시도의회 홈페이지.

지방의회별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으며, 서울, 부산 등은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제주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표 4〉 전국 시도의회 전문위원 배치 현황

| 구분 | 배치 현황 |
|---|---|
| 서울 |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교육, 예결특별 |
| 부산 | 운영. 기획행정, 경제문화, 복지환경. 해양교통, 도시안전, 교육, 예결특별, 윤리특별 |
| 대구 | 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교통, 교육 |
| 인천 | 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육 |
| 광주 | 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문화 |
| 대전 | 운영, 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 교육 |
| 세종 | 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 교육 |
| 울산 | 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 |
| 경기 | 운영, 기획재정, 경제과학기술, 안전행정, 문체육관광, 농정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교육협력, 교육 |
| 강원 | 운영예결,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교육 |
| 충북 | 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 산업경제, 건설환경소방, 교육 |
| 충남 | 운영,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해양소방, 교육 |
| 전북 | 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경제, 문화건설안전, 교육 |
| 전남 | 운영, 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교육 |
| 경북 | 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
| 경남 | 운영, 기획행정, 교육, 농해양수산, 경제환경, 건설소방, 문화복지 |
| 제주 | 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예결특별 |

자료 : 전국 시도의회 홈페이지.

##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영균(2015)은 '지방의회 지원기구 직무역량 및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회 사무 직원의 교육 및 자기개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행과 수직적 수평적 구성원간 역할분담의 명확한 체계화는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과 자기개발 기회를 확충하고 현재 명확하지 못한 역할관계를 체계화하는 것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손진상(2013)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와 기관분리형 구조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언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회 직렬제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지방의회 전문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위원 개방 직렬제 도입, 전문위원실 가능강화와 정책·예산분석 지원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종술(2011)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시대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입법기능 이외에도 지방의원 스스로가 직접 집행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소극적인 감시·감독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의 진정한 거버넌스 주체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만족을 위한 지방행정의 최일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원적 운영체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하였으며, 사무기구 인사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사무처장과 사무기구 장에 대한 임명권은 의회 의장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한 의장 임명과 사무처장 임명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 전문직원에 대한 의회 직렬 신설을 제안하였다. 권영주(2011)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의회직렬을 두고 이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는 제1안(의회직렬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제1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1안(의회간 인사교류)과,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처(국, 과)장의 임명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및 사무처 (국, 과)장에 대한 인사권 위임을 주장하였다

지방의회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지방의회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등 전문직원에 대한 개방형 공모 확대와 의회 직렬 신설을 제안하였다.

# Ⅲ.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로 연구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선정하였다. 선정 근거로는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의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광역의회로 통합되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권한이 집중된 제주특별자치도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주민대표 기관으로의 전문성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역량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현황

### 1) 사무처 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총무담당관(총무담당, 경리담당, 공보담당, 미디어담당), 의사담당관(의사담당, 기록담당), 입법정책관(입법지원담당, 법제심사담당)이 있으며, 총 8분야(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이 있다.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기구

### 2) 사무처 직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원 153명으로 2~3급 1명, 4급 9명, 5급 30명, 6급 20명, 7급 44명, 8급 8명, 전문경력 3명, 시간선택제 2명, 청원경찰 11명 주무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8개 위원회 8명의 전문위원과 20명의 정책자문위원이 배치되어 있다.

〈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 현황

| 구분 | | 정원 | 현원 | 결과원 |
|---|---|---|---|---|
| 계 | | 153 | 153 | - |
| 소계 | | 117 | 117 | - |
| 일반직 및 별정직 | 2~3급 | 1 | 1 | - |
| | 4급 | 9 | 9 | - |
| | 5급 | 30 | 30 | - |
| | 6급 | 20 | 20 | - |
| | 7급 | 33 | 44 | 11 |
| | 8급 | 11 | 8 | △3 |
| | 9급 | 7 | 0 | △7 |
| | 전문경력 | 3 | 3 | - |
| | 시간선택제 | 3 | 2 | △1 |
| 청원경찰 | | 11 | 11 | - |
| 주무관 | | 25 | 25 |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3) 사무처 사무분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총무담당관실의 경우 의회사무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교류사업 추진,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전보, 사무직원의 복무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사담당관실은 연간 의회 기본일정 수립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서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입법정책관실은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주민 입법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 청원 및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인사업무 담당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도정 주요사업 및 예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계획 적정성 분석·검토에 관한 사항,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안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8).

〈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사무분장

| | |
|---|---|
| 총무담당관 |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br>- 의원 등록관리 및 대외활동 지원<br>- 의전행사 및 의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br>-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지원<br>- 전체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br>- 국제교류사업 추진<br>- 포상에 관한 사항<br>-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br>- 폐회중 의원 사직서 처리 및 궐원통지<br>-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전보·징계처분(일반직 제외)<br>- 사무직원 복무관리 및 비위 등 사건조사(처리) 등 |
| 의사담당관 |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br>-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br>-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br>-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br>- 전체의원 회의운영 및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br>- 의결문서 보존관리<br>-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서에 관한 사항<br>- 회기중 전체의원 도내·외 현장 의정활동 지원<br>- 의안의 처리(접수, 회부,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사항<br>-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 등 |
| 입법정책관 |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br>-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br>- 주민 입법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br>- 의회 소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br>-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에 관한 사항<br>-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br>-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br>- 의회 발의 결의문, 건의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등 |
| 전문위원<br>(예산결산특별<br>전문위원 제외) | -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br>-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br>- 청원 및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br>-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br>- 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br>- 위원회 회의방청·촬영·녹음·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사항<br>-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br>-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br>-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인사업무 담당부서 소관 상임위원회)<br>-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특별위원회 구성시)<br>-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회운영전문위원)<br>-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의회운영전문위원)<br>- 정책자문위원 사무 등 |
| 예산결산특별<br>전문위원 | - 도정 주요사업 및 예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br>- 지방재정계획 적정성 분석·검토에 관한 사항<br>-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br>-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안에 관한 사항<br>-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br>-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등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4) 전문위원별 직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위원회 전문위원별 직급을 살펴보면 각 위원회 특성에 따라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별 직급

| 위원회 | 소속 전문위원 | 직급 |
|---|---|---|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 지방서기관이나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 | 지방서기관이나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전문위원 | 지방서기관이나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 환경도시위원회 | 환경도시위원회전문위원 |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이나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전문위원 | 지방서기관이나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 농수축경제위원회 | 농수축경제위원회전문위원 |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이나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적자원 관리 현황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의회의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자치법규,2017)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1) 의정 역량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제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에 근거하여 도의회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개 상임위원회 20명의 박사급 정책자문위원이 배치되어 있다.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인원은 최대 21명이다(제주특별법, 2018).

제39조(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 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자문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교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근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국외 행정기관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자치법규,2017).

| |
|---|
| 제11조(인사교류) 도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2016.12.30.〉 |

##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시사점 도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적자원 관리는 중요하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의회 의장의 인사권이 이원화되어 있다. 사무처 직원의 경우 실질적인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사무처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방의원의 불신, 심리적 갈등, 감독권의 약화, 근무성적평정의 불이익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황아란, 2003). 둘째, 전문위원 제도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의 2항 개정에 의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의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기구의 하위조직에서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되었으나,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 또한 자치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셋째,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신분 또한 집행기관 소속으로 전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 인사교류이다. 현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로 사무처 직원의 인사교류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사제도 운영 상 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국외 행정기관으로의 인사교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진다. 다섯째, 정책자문위원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감시를 위해 정책자문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관련 의원 요구사항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 및 실무경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박사급 전문인력의 의회 및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활용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 Ⅳ.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전략과제

## 1. 기본방향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의회의 업무 전문성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중요성에 비해 의회의 제도와 운영은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특히, 기관 구성형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법률안 등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첫째,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고, 둘째, 현재 근무 중인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확대 방안

### 1) 의회직렬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경제와 균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높아져야 한다(손진상, 2013). 이를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인사권 독립의 일환으로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직렬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의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직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등 사실상 의회소속이 아닌 자치단체의 일원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의회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인사에 대한 불이익의 우려로 의원들의 적극적 의정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의회직렬의 경우 소수직렬에 대한 문제 또한 있다. 승진의 기회가 적고 의회에서만 근무한다는 점이 근무의욕 저하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기관구성형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2) 인사교류 확대

의회 구성원의 인사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는 의회직렬이 신설되었을 경우 작은 시군구의회 구성원의 인사행정 범위를 수도권 등을 포함한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체제개편을 통한 시군의회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실천에 용이하며, 의회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 행정기관, 국가기관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

##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전문성 강화

### 1) 전문위원실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은 위원회 특성에 따라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사무처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1급), 전문위원은 이사관 및 전문계약직 2호(2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 견제·감시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 부산 등에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함께 두고 있다. 또한 점차 전문위원에 대한 개방형 공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예결산 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등 보좌기능의 핵심인 업무를 수행을 위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신설과 전문위원의 개방형 공모가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위원 산하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정책자문위원 운영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상임위원회 별로 정책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정책자문위원은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즉,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 자격 기준은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자와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업무범위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관련 의원 요구사항 지원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대다수가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다. 이에 정책자문위원의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고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의회의 특성 상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명~3명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의정지원 연구실 형태의 구성을 통해 지역 정책 발굴 등 정책자문위원의 연구기능 확대와 연구능력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 V.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강-지방자치단체장', '약-지방의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복적으로 제기 되는 것이 의회 전문성 강화이다. 특히,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회사무처 의회직렬 신설이 필요하다. 의회직렬의 구체적인 신설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강조할 점은 계급제가 아닌 직위 분류제를 근간으로 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분류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인사권 확대가 인사권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가 필요하다. 의회 직렬신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 등으로 도 본청, 행정시의 조직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3개 읍면동에 대한 인원확충 등에 대한 계획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존 사무처 직원 배치로 인한 읍면동 생활행정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회 간 인사교류 방안이다. 의회 간 인사 교류안은 의회직렬신설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인사행정의 범위를 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등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협소한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제안되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인사운영 범위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의회직 신설시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으므로, 타 지역과 인사 교류를 할 경우 도지사와 협조를 거치지 않고도 의장의 권한 내에서 수행될 수 있어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문위원실 강화이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입법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4급으로 묶여있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사관 혹은 의사지원팀 등의 지원조직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문위원실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회인사권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일반직 혹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두되, 전문위원의 정수는 지방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며, 또한 지원조직의 공무원 역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입법정책 활동지원 강화이다.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조직 재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입법정책 개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2담당관 체제(입법지원담당, 법제심사담당)와 인력으로는 의원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을 입법 및 정책지원 업무로 구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정책분석 및 조사분석 업무까지도 필요하다 또한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확보 및 정책보좌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권영주. (2011).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 :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한국인사행정학보」, 10(2): 1-31.

박재창. (2003). 국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체계 개혁의 방향과 과제.「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손진상. (2013).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공법학연구」, 14(1): 325-353.

양기근. (2008).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개선방안: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연구」, 10(2): 69-91.

오영균. (2015). 지방의회 지원기구 직무역량 및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29(3): 27-45.

유규창. (1998).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경영학연구」, 27: 585-610.

이용탁. (2005).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성과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인적자원관리연구」, 12(3): 65-87.

최봉기·정은영·이석원. (2008).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관리실태와 안시권 독립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20(1): 137-210.

최종술. (201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제도 개선방안,「한국자치행정학보」, 25(3): 377-397.

황아란. (2003).「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확대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국시도의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www.council.jeju.kr/.

접수일(2018년 07월 31일)
수정일(2018년 08월 13일)
게재확정일(2018년 08월 27일)

〈국문초록〉

# 지방의회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강-지방자치단체장', '약-지방의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복적으로 제기 되는 것이 의회 전문성 강화이다. 특히,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회사무처 의회직렬 신설이 필요하다. 의회직렬의 구체적인 신설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강조할 점은 계급제가 아닌 직위 분류제를 근간으로 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분류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회간 인사교류 방안이다. 의회간 인사교류안은 의회직렬신설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인사행정의 범위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위원실 강화이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입법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4급으로 묶여있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사관 혹은 의사지원팀 등의 지원조직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문위원실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입법정책 활동지원 강화이다.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조직 재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을 입법 및 정책지원 업무로 구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정책분석 및 조사분석 업무까지도 필요하다 또한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확보 및 정책보좌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주제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 인적자원 관리, 의회직렬